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| 의안 번호 | 178 |
|---|---|

2019. 4. 22. (월)
교 육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이숙애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19년 4월 9일

다. 회부일자: 2019년 4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2019년 4월 22일
(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**(제안설명자: 이숙애 의원)**

### 가. 제안이유

2018. 3. 27. 개정된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이 2018.9.28.부터 시행됨에 따라 ‘성별영향분석평가’가 ‘성별영향평가’로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(현행) “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”

(변경) “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”로

○ 명칭 “성별영향분석 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변경

## 3. 검토보고 요지

**(수석전문위원 이충환)**

○ 본 개정조례안은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이 2018년 3월 27일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관련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변경하려는 것으로

○ 상위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

○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 략”

## 5. 토 론 요 지: “생 략”

## 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## 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 음”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 음”

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○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10조의2”를 “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0조의2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)”를 “(특정성별영향평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”을 “「성별영향평가법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특정성별영향평가”로, 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”를 “성별영향평가위원회”로, 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특정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”를 “성별영향평가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(이하 ″분석평가″라 한다)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,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“분석평가”을 각각 “성별영향평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”을 “특정성별영향평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분석평가책임관”을 “성별영향평가책임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나목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분석평가”을 “성별영향평가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충청북도교육청<br>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|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<br>조례 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--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0조의2 ----------. |
| 제2조(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| 제2조(특정성별영향평가) ① ---------- 「성별영향평가법」----------. |
| 1.·2. (생 략) | 1.·2. (현행과 같음) |
|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. | ② ---------- 특정성별영향평가---------- 성별영향평가위원회---------- 특정성별영향평가----------. |

| | |
|---|---|
| 제3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법 제13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 | 제3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---------- 성별영향평가위원회---------- ----------. |
| 1. 성별영향분석평가(이하 "분석평가"라 한다) 대상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| 1. 성별영향평가 ---------- ---------- 성별영향평가 ---------- |
| 2.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| 2. 성별영향평가---------- ---------- |
| 3.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| 3. 성별영향평가---------- ---------- |
| 4.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 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| 4. ---------- 특정성별영향평가---------- ---------- - |
| 5. (생 략) | 5. (현행과 같음) |
| 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 | 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,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이 된다. | ② ---------- ---------- 성별영향평가책임관---------- ----------. |
|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| ③ ---------- --------. |

| | |
|---|---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, 다만, 특정 성(性)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. | 2. ----------. |
| 가. (생 략) | 가. (현행과 같음) |
| 나.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| 나. 성별영향평가---------- |
| ④ (생 략) | ④ (현행과 같음) |
| 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생 략) | 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|
|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. | ④ ---------- 성별영향평가----------. |
| ⑤ (생 략) | ⑤ (현행과 같음) |

# 관 계 법 령

## ❒ 성별영향평가법

[시행 2018. 9. 28.] [대통령령 제29095호, 2018. 8. 14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3. 27.>

1. “성별영향평가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중앙행정기관“이란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
3. “지방자치단체“란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.

제10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3. 27.>

1. 시행 중인 조례·규칙
2.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,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7.>

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3. 27.>

[본조신설 2016. 12. 20.]

[제목개정 2018. 3. 27.]

제13조의2(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성별영향 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8. 3. 27.>

② 지방위원회의 기능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2. 3.]

[제목개정 2018. 3. 27.]

#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수반 요인

○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변경하는 것으로,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

○ 기존 총사업비 : 1,200천원

- 위원수당 : 10명(당연직 위원 5명 제외), 1,000천원
- 용 품 비 : 5종, 200천 원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○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